

연구윤리 및 윤리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(2008. 10. 24)

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 한국소음진동공학회(이하 “학회”라 한다)의 윤리현장에 따라 학회에서의 출판과 발표 등 학술활동과 관계되는 연구윤리의 확립, 연구발표 부정행위의 예방과 검증, 제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 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,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.
②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이 임명한다.
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윤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
제 3 조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으로 활동한다.

- 1) 연구윤리 수립 및 추진
- 2)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과 방지
- 3) 연구 부정행위 심의 및 의결
- 4)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내용 결정 및 이사회에 결과보고
- 5) 기타 연구 윤리의 개선 및 증진에 관한 사항

제 4 조 (위원회 소집 및 의결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, 재적위원 2/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② 의결된 내용은 부정행위 의심자(피 제소자)에게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 의견을 받아야 한다.
- ③ 위원회에서는 부정행위 의심자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하거나 필요시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의결토록 한다.
- ④ 의결된 내용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최종 결정한다.
-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, 외부 인사나 위원이 아닌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⑥ 위원회에서 참가자 발표내용 및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제 5 조 (연구발표 부정행위의 범위) ① “표절”이란 출처를 밝히지 않은채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인용치 않고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

- ② “위조” 및 “변조”란 타인이나 자기 자신의 연구자료 결과의 조작이나 변형,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③ “이중게재”란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일한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④ “부당한 저자표기”란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.
- ⑤ 기타 용인할 수 없는 범위를 말한다.

제 6 조 (연구 부정행위의 제보 및 통보) ① 연구 부정행위의 내용은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과 학회지(소음·진동)에 발표된 간행물에 한한다.

- ②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는 육하원칙에 따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는 제보가 접수된 후 3개월 내에 심의 내용을 확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 내용은 10일내에 제보자와 부정행위자에게 통보하고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.

⑤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된다.

제 7 조 (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) ① 연구 부정이 확인된 저자에게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정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다음의 제재를 선택하여 가할 수 있다.

- 1) 해당 발표연구물에 대한 학회 간행물에 게재취소
- 2) 5년간 학회의 논문집과 학회지에 투고금지
- 3) 5년간 학회 학술대회 발표금지
- 4) 부정행위자 소속기관에 부정행위 내용 통보
- 5) 학회 회원자격 박탈

② 제보자가 고의로 허위제보를 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자 수준과 동일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.

부 칙 : 본 규정은 200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(제정).